

의묘기독위원회 규정	기록위원회 규정	워회	록위	l 류기	의
------------	----------	----	----	------	---

관리번호	W-12.1.1	제정일	2013년 02월 15일
승인책임자	병원장	최근개정일	2016년 10월 31일
검토책임자	규정관리위원장	시행일	2016년 12월 01일
주무부서	심사과, 원무과	검토주기	3년
관련근거	의료기관인증기준12.1	검토예정일	2019년 10월 30일

### I. 명칭

의무기록의 작성, 평가, 보존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의무기록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함)를 둔다.

## Ⅱ. 목적

병원에 의무 기록 관리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직원들이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통합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

## Ⅲ. 구성

- 1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2. 위원장은 병원장이 위촉하여 임명하며, 간사는 심사팀장이 된다.
- 3. 위촉위원은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원 중에서 병원장이 임명한다.

# Ⅳ. 임기
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#### V. 위원장 임무

- 1.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 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- 2. 위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회무를 대행한다.

# VI. 기능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.

- 1. 의료정보/의무기록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2. 의무기록 서식의 제정 및 개폐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
- 3. 의료정보/의무기록 이용 기준 및 관련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
- 4. 의료정보/의무기록의 기록 항목과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
- 5. 의료정보/의무기록 정보 수집 및 활용, 분석, 평가에 관한 사항
- 6. 의료정보/의무기록 양질의 유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7. 의료정보/의무기록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
- 8. 의료정보/의무기록 정보 생성 및 이용에 관한 사항
- 9. 의료정보/의무기록 정보 보존, 파기, 폐기 관리에 관한 사항



- 10. 의료정보/의무기록 접근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
- 11. 표준약어 및 금기약어(기호)에 관한 사항
- 12. 의무기록 상벌제도에 관한 사항
- 13.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
- 14. 기타 의료정보/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

# VII. 회의

회의는 분기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병원장이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# VIII. 의결

- 1.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2.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.

## IX. 간사

- 1.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.
- 2. 간사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,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.

### X. 보고

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참석자 명단을 기록하여 병원장에게 보고,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부서에 그 내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한다.

# XI. 내규의 제정

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 본 기관 의무기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.

입안자	규정관리위원장	
승인책임자	병원장	
서명일		